



제 893 호

2009년 11월 2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차 례

공 고

- 공고 제2009 -160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 공고 제2009 -1605호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부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7
- 공고 제2009 -160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구역 : 용도지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정정 공고 9
- 공고 제2009 -1610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10
- 공고 제2009 -161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12
- 공고 제2009 -1613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14
- 공고 제2009 -1614호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만료예고 공시송달 공고 15
- 공고 제2009 -16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8
- 공고 제2009 -16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3
- 공고 제2009 -1619호 여객자동차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보서 수취 불능분 공시송달 31
- 공고 제2009 -1622호 장수·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지급 공시송달 공고 32
- 공고 제2009 -162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 공고 제2009 -1628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0

고 시

- 고시 제2009 -5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고시 41
- 고시 제2009 -55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 구월동 1264-9번지) 실시계획인가고시 43
- 간석이화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석이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 47
- 고시 제2009 - 001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0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로 정비함에 따라,
 - 「주택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안 제명)
 - 기존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 보조금의 지원범위 개정(안 제2조)
- 지원대상 제외 개정(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건축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2792, FAX 453-27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 「주택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범위 등)

-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의 지원비율 및 금액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조례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신청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놀이터, 장애인편의시설, 경로당의 유지보수사업
 2. 재난관련시설 보수사업
 3. 보안등 유지보수사업
 4.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 제외)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단지에 속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원신청서 제출) 관리주체는 보조금 신청시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의한 서류 외에 구체적인 사업물량 및 내역이 기재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원가계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기간을 정하여 지원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기간종료일을 접수일로 본다)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 결정 20일 이내에 공사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제출한 사업완료(완공)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공동주택관리비 입출금관련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주체의 공시의무)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관리주체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와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서 등 제출) 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개시(착공)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착공) 후 10일 이내에 조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개시(착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개시(착공)보고서를 제출한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업완료(완공)보고서 및 별지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정산서

[단위 : 원]

사업명	수령액	지급액	잔 액	비 고
총 계				

20 년 월 일에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인)
 입주자 대표 ○ ○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사업비 영수증, 공사 전, 중, 후 사진 등 증빙서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05호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부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기 간 : 2009. 11. 16 ~ 2009. 11. 30
- 공 고 대 상 : 오정환 외 19명
(붙임 “공고내역” 명단 참조)
- 공 고 내 용 :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부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동법 제15조를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009. 11. 30 까지 남동구청 청소과(☎ 032-453-2555)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 시에는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1.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공고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부과일	등기발송 결과
1	오정환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1346-13	3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2	김기남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37-67	3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3	김경혜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37-136	3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4	정미희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67-18	3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5	이지혜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508-88	10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6	곽영미	인천광역시남동구관교동 13-7	3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7	박태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1098-15	3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8	강정숙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1동 554-7	100,000	2009-11-02	주소 불명
9	정연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1101-8	3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10	강민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1091	3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11	임상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1094-4	3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12	최복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1102-1	3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13	홍화란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448-11	10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14	윤은경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224-759	3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15	김진숙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113-4	3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16	임영식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 109-167	100,000	2009-11-02	주소 불명
17	김성원	인천광역시남동구화수동 9-47	10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18	박덕규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 244-12	10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19	박영희	인천광역시부평구산곡동 124-1	10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20	서정희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104-22	100,000	2009-11-02	수취인 부재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60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구역 : 용도지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정정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9-1599호(2009.11.14)로 공고된 인천 도시관리계획【소래구역 : 용도지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 내용중 오기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 11. 1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정정 공고내용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 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인천시남동구 논현동 일원	준공업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53,592	250	•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정정내용 : 용적률 당초 230% → 변경 25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10호

인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가. 시 설 명

- 도로[만수2동 소로3-86호선 결정(신설)]
- 주차장[간석3동 제1공영주차장 주차장 결정(폐지)]

나. 입안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72-51번지 일원외 1개소
- 내 용 : 도로(신설 1개노선), 주차장(폐지 1개소)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86	6	국지도로	90	만수동 72-50 중1-62	만수동 72-2 소3-16	일반 도로	-	-	준주거 지역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간석3동 49-26	338.4	감 338.4	-	2001.12.18	일반상업지역

■ 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지	주차장	주차장 폐지 338.4㎡ → 0.0㎡(감 338.4)	· 도시관리계획 변경

2. 관계도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생략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개발과 : ☎ 453-2992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수취인 부재)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9. 11. 17. ~ 2009. 12. 01.(15일간)

2. 청문대상 및 통지사항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나. 당사자	성 명 칭	최인식(600925-*****)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7/3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008644(2007.10.12)호 관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812(2009.03.12 심리불속행기각 : 종국)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 택시운전자격 취소				
마.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37호,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별표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별표5				
바. 청문	기 관 명	인천남동구청	부서명	자동차관리과	담 당 자	우정식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			전화번호	453-2912
	일 시	2009년 12월 01일 10:00부터 11시까지				
	장 소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2층				
	청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담당		
	성 명		이 진 호			

3. 유의사항

- 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종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및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13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9. 12. 1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9. 11. 17 ~ 2009. 12. 1
2. 대상 자동차

신 청 대 상 차 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 명	사 용 본 거 지			
인천70라3032	백창현	인천 남동구 만수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광주군법원 (2000카단799)	문정임	경기 하남시 덕풍동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
(☎453-2941)

2009. 11.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1614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舊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신고를 필하여 사용중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미배달(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건축주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1. 1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명칭: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만료예고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3. 처분대상: 불임참조
4. 처분내용: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만료예고 알림
5. 공고기간: 2009.11.17. ~ 2009.12.01.
6. 게시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유의사항

가. 귀하(사)께서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舊 제15조]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필하여 사용중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오니 존치기간 만료전 철거완료 후 증빙자료(철거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를 필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실 경우 위법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각별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남동구 건축과(☎ 032-453-276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 가설건축물존치기간만료 대상 1부

■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만료 대상

연 번	가설건축물신고번호	신고일	존치기간	대지위치	건축주	용도	구조	연면적 (㎡)
1	1999-구월3동-가설건축물 축조신고-18	19991109	20100103	구월동 1344-20	최미영	창고시설	기타 강구조	39.22
2	2002-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43	20020223	20100127	고잔동 235-1	김상열	창고시설	강파이프 구조	178
3	2002-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64	20020314	20091211	구월동 1121-7	윤종열	창고시설	강파이프 구조	48
4	2002-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178	20020822	20091230	고잔동 462-2	강진기	창고시설	기타강구 조	60
5	2002-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257	20021206	20091203	구월동 1092-7	박인옥	업무시설	기타강구 조	54
6	2003-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7	20030115	20100117	논현동 554-9	조영춘	자동차관련시 설	경량철골 구조	40
7	2003-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250	20031222	20100109	간석동 144-1	정영근	창고시설	기타강구 조	50.4
8	2004-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17	20040120	20100120	만수동 934-2	최승호	창고시설	기타강구 조	45
9	2004-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27	20040130	20091231	구월동 1112-1 외1필지	이철재	판매및영업시 설 (건본주택)	일반철골 구조	1048.41
10	2004-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66	20040303	20100110	간석동 1-380	김진무	창고시설	기타강구 조	33
11	2004-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152	20040611	20100110	구월동 1239-16	정병칠	업무시설	기타강구 조	14.4
12	2005-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4	20050112	20100110	구월동 1170-12	이미숙	창고시설	기타강구 조	49
13	2005-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23	20050222	20100121	간석동 601-2	김명숙 외인	창고시설	강파이프 구조	172

14	2005-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201	20051017	20091231	논현동 553-22	대한예수교장로 회논현제일교회	업무시설	기타강구 조	78
15	2005-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245	20051221	20091220	구월동 1280-1	감상용	창고시설	강파이프 구조	132
16	2005-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258	20051226	20091225	간석동 235-22	한동국	창고시설	강파이프 구조	212.5
17	2005-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262	20051229	20091230	구월동 1367-14	김태희	자동차 관련시설	경량철골 구조	23
18	2006-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4	20060118	20100118	운연동 328-3	변정란	창고시설	강파이프 구조	198
19	2006-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45	20060328	20091231	고잔동 761	남궁홍규	창고시설	기타강구 조	159
20	2007-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23	20070124	20100121	수산동 505	최중식	창고시설	기타강구 조	18
21	2007-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233	20070919	20091231	고잔동 761	남궁홍규(2)	업무시설	기타강구 조	20,22
22	2007-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324	20071214	20091211	만수동 975-4	도상호	창고시설	강파이프 구조	28.59
23	2007-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338	20071218	20091217	만수동 9871	김옥술	업무시설	기타강구 조	24.6
24	2008-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2	20080104	20091210	장수동 781-1	조남임	가설건축물	기타강구 조	7.2
25	2008-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14	20080114	20100109	구월동 1407-6	이상희	가설건축물	강파이프 구조	9
26	2008-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19	20080115	20100110	서창동 토지구획정 리지구 26블럭 2로트	조남서	가설건축물	강파이프 구조	27.3
27	2008-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23	20080118	20100104	논현동 소래택지개 발예정지구 주차장용지 2블럭	유균진	가설건축물	일반철골 구조	1106.55
28	2008-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229	20081008	20091231	논현동 591	(주)한창건설	가설건축물	기타강구 조	108
29	2008-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231	20081010	20091214	도림동 도림토지구 획정리사업 지구 66외 1필지	김홍림	가설건축물	기타강구 조	148
30	2008-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235	20081015	20091231	고잔동 408	(주)태현자원개발	가설건축물	기타강구 조	50
31	2009-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71	20090511	20091231	고잔동 83	윤광영	가설건축물	기타강구 조	36
32	2009-건축과-가설건축물축 조신고-143	20090827	20100131	고잔동 442	덕원건설산업(주)	가설건축물	기타강구 조	36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1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입법취지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 3%에서 2%하향 조정 융자신청 대상은 늘리고 영업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과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위생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88

☎ : 032)453-2632, FAX : 032)453-2758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의 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용자 신청 대상은 늘리면서 영업자의 이자상환 부담은 줄이고,
 - 저금리 대출자금으로 영업장의 위생시설 등을 개선하여 식품위
 생 서비스 향상과 함께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
 고자 함

-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에 의한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
 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 이었으나,
 - 영업장의 위생시설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융자신청 대상은 늘
 리고 영업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리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3%” 을 “2퍼센트” 로, “1%” 을 “1퍼센트” 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대출 금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된 금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 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리 1% 로 한다.	② ----- ----- 2퍼센트 ----- ----- 1퍼센트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6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제안이유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관리의 위탁 (안 제4조)
-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 (안 제5조 및 제9조)
- 지도·감독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11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53-2562, FAX 453-25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관리의 위탁 (안 제4조)
 -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 (안 제5조 및 제9조)
 - 지도·감독 (안 제13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6조 및 제77조
 -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 및 제17조의4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활용선별장·음식물자원화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선별장” (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투입, 파쇄, 이송, 선별, 압축, 용융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자원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투입, 파쇄, 선별, 이송, 기전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별장·처리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위탁시설”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공단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또는 환경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3.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시설을 설치한 자
 4.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위탁시설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탁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건전성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5. 관련 시설의 운영 경험과 능력 등

②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탁시설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수탁자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탁시설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관계공무원 3명,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현장확인 및 수탁을 신청한 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 등 심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5조의 평가항목에 따른 최다득점자를 수탁을 위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⑥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에 위촉됨으로서 개시되고, 수탁자가 선정됨으로서 만료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위탁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다른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개축 또는 수선)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시설을 개축 또는 수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개축하거나 수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 및 부산물의 처리 등)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과 부산물(잔재쓰레기, 협잡물 및 처리산물을 포함한다)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용품, 물질에 대하여는 자원화 하는 등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고용된 인력의 승계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사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 서구 가좌동 현종옥 외 3명
- 공 고 기 간 : 2009. 11. 18. ~ 2009. 12. 03.(15일간)
- 공 고 내 용 : 2008년도 여객자동차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보서 수취 불능분 공시송달

연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1	현종옥	420420- *****	서구 가좌동	2008년도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택시운전자격 효력정지(5일)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78조
2	한상원	620124- *****	남동구 만수동	“	택시운전자격 효력정지(5일)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78조
3	이문균	530525- *****	남동구 만수동	“	택시운전자격 효력정지(5일)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78조
4	구자덕	721012- *****	남동구 간석동	“	택시운전자격 효력정지(5일)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78조

1. 2008년도 여객자동차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의견제출)에 따른 사전통보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미수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공고대상자는 2009.12.0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통지한 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운수행정팀(☎032-453-2912, FAX : 032-453-2919)으로 전송 또는 지참하여 방문하시는 등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공고기한 내 의견제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예고된 행정처분 사항대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22호

공시송달 공고

『장수·서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환지받은 부족면적에 대한 교부 청산금 지급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 자께서는 구비서류

(안내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예금통장)를 지참하시고 기간 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9. 11. 1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장수·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 지급)
2.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3. 공 고 기 간 : 2009. 11. 19 ~ 2009. 12. 2

4. 공시송달 내역

- 가. 송달 내용 : 장수서창지구 교부청산금 지급
- 나. 사 업 명 : 장수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다. 관 계 자 : 박혜숙 외 62인
- 라. 신청 기간 : 2009. 12. 30

5. 신 청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3층 도시개발과

6. 공시송달 상세내역 : 청산금 지급내역(별지 참조)

7. 기 타

- 가. 청산금 지급 안내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나. 환지처분일(장수지구:2008.12.16, 서창지구:2008.12.30)로부터 5년간 청산금교부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의2(청산금의 소멸) 규정에 의거 시효소멸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 교부청산금 지급대상자 명단

연번	지번	토지소유자	주소	비 고
1	장수 515-4	박혜숙	인천 부평구 십정동436-6 금성@ 라/308	
2	장수 545-3	성흔교회	인천.남동구 장수동 780-14	
3	장수 526-3	유연경	인천서구가정동197-11 102호	
4	장수 526-3	심충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67-1 영진빌라302호	
5	장수 553	윤동연	인천남동구장수동558	
6	장수540-0 장수540-1	윤봉학	인천. 남동구 만수동 579-6	
7	장수 588-2	윤상섭	인천 남동구 장수동 576	
8	장수 616-2	윤정삼	인천 남동구 장수동 537	
9	장수 517-3	윤추명	인천 남동구 장수동 531	
10	장수580-48	이미성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48-9	
11	장수 515-4	이실원	경북 구미시 봉곡동528 영남네오빌씨티 201/1403	
12	장수 542-4	이용만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1차@ 110/1402	
13	장수 542-0	이종수	인천 남동구 장수동 787-12 유니온빌라 C/101	
14	장수580-48	이해섭	인천 남동구 장수동 789-2 금강아트빌402 호	
15	장수 586-0	장정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0-1 미리내마을 941/702	
16	장수 587-6	최아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464	
17	장수 611-3	최영삼	인천 남동구 구월동1206-2 상가주택5층	
18	장수 532-0	최응두	인천 남동구 장수동 519	
19	장수580-48	함영숙	인천 남동구 만수동 948-22 1층	
20	장수 570-2	홍영숙	인천 남동구 장수동 788-16	
21	장수580-48	홍지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48-9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 교부청산금 지급대상자 명단

연 번	지 번	토지소유자	주 소	비고
1	서창 산29	경주박씨종친회	인천 남동구 서창동 144	
2	서창 377-4	(주)한국토지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5	
3	서창228-4	강소기	인천, 남동구 서창동 570-9 서창베라체202호	
4	서창 169-3	권복순	인천 남동구 서창동572-5 영종하이빌 B/401	
5	서창 산29	김강인	인천 남동구 서창동575-5 동보아트빌102/301	
6	서창 산29	김동준	인천 남동구 서창동575-5 동보아트빌102/501	
7	서창 286-3	김성배	인천, 남동구 서창동538 태평(아)206/1107	
8	서창 376	김영철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1303 e-편한세상@106/404	
9	서창 산29	김영훈	인천 남동구 서창동575-5 동보아트빌102/302	
10	서창 169-3	김이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572-5 영종하이빌 B/202	
11	서창 371-0	김정아, 이재영	서울양천구목동911 목동신시가지 @608/103	
11	서창 377-23	김정아, 이재영	서울양천구목동911 목동신시가지 @608/103	
13	서창 228-4	박덕래	인천 남동구 서창동 570-9 서창베라체501호	
14	서창 161-5	박미숙	인천 남동구 서창동573-5 씨니하우스101/201	
15	서창 169-3	박은영	서울 양천구 신월동565-9 선경연립101호	
16	서창 산29	박정순	인천 남동구 서창동575-5 동보아트빌102/402	
17	서창 291-2	백남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192	
18	서창 169-2	서양순	인천 남동구 서창동 571-12 우석파크빌101/301	
19	서창 169-3	신만정	인천 남동구 서창동572-5 영종하이빌 B/101	
20	서창 169-2	신옥수	인천 남동구 서창동 571-12 우석파크빌101/402	
21	서창 377-4	윤택태훈	서울 종로구 내수동 195	
22	서창 산29	원기환	인천 남동구 서창동575-5 동보아트빌102/401	
23	서창 169-2	유춘자	인천 남동구 서창동 571-12 우석파크빌101/401	
24	서창 291-2	윤병진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85	
25	서창 166-4	윤인수	인천, 남동구 서창동571-11 서울아트빌201호	
26	서창 169-3	이규태	인천 남동구 서창동572-5 영종하이빌 B/402	
27	서창 204-2	이옥채	서울 동작구 대방동500 성원@103/906	
28	서창 353-2	이운식	주민번호 없음, 주소확인 불능	
29	서창 371-0	이재룡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864 상무버들@106/801	
29	서창 377-23	이재룡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864 상무버들@106/801	
31	서창 산52	장인배	인천 남동구 서창동 545 현대모닝@306/1604	
32	서창 169-2	전효정	인천 남동구 서창동 571-12 우석파크빌101/201	
33	서창 161-6	정순중	인천 남동구 서창동 씨니하우스 101/301	
34	서창 340-1	천선하	인천 남동구 서창동 566-3 에이스빌 202호	
35	서창 334-1	최박문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2 포스코더샵@ 102/1301	
35	서창 334-1	최성호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2 포스코더샵@ 102/1301	
36	서창 169-3	최병운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82-20	
37	서창 291-2	한효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623-14 401호	
38	서창 136-1	홍춘식	인천 남동구 서창동 143	
39	서창 산29	황정은	인천 남동구 서창동575-5 동보아트빌102/301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62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 월 20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위생적인 관리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세척비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12월1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청소과장)에게 서면 FAX(453-2559)또는 전화(453-257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위탁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척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세척비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척비 일부를 지원 (안 제10조제4항)
 - 지원금은 세척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함. (안 제10조제5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폐기물관리법」 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청결·위생관리를 위하여 위탁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지원금액은 세척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2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주)다주토건 외 76건
- 공 고 기 간 : 2009. 11. 20. ~ 2009. 12. 07.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09년9월1회차)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게재생략
(관계부서 비치 및 구 홈페이지 참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 수취인 미거주 ·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과태료 납부대상자께서는 납기내기간 2009. 11. 30일 (납기후일자-2009. 12. 31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032-453 -2925 ,292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또는 전국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2009. 11.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 가산금 징수 및 매1개월마다 과태료의 1.2%씩 최대 60개월 동안 증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9 -5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1. 1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고 시 일 : 2009. 11. 16(월)
- 고시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 고시내용 : 도로명(부여)등에 관한 사항

전 체	도로명 부여(구분)				비 고
	대로	로	길		
			골격도로	기초번호등	
817	1	33	46	737	

○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 견수령 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 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받은 날로부 터 (동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 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도로구간 및 도로명조서(안내도) :

계재생략(토지정보과 비치 및 구 홈페이지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새주소관리팀(☎ 032-453-577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9-55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 구월동 1264-9번지) 실시계획인가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주차장 : 구월동 1264-9번지, 사업명 : 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032-453-2993), 지역경제과(☎032-453-26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 11. 2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4동 1264-9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교통시설(주차장)
 - 【명 칭】 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3. 사업의 규모
 - 면적(A) = 535.20㎡(주차대수 57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 (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0.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7.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8.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고시 일련 번호	동명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면 적 (㎡)	잔 여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도 로 내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1	구월동	1264 -9	대	535.2	535.2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	인천광역시 남동구			
합	계			535.2	535.2	0.0					

인 가 조 건

【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법령에서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법에 따른 절차(개발법에 의한 행위 인·허가 등)를 이행 후 시행하여야 함.
2. <건축허가 관련>
 - 모래내시장 주차장은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이므로 건축허가(협의) 사항을 허가 부서(건축과)와 별도 협의하여 처리할 것.
3. <배수설비 설치 관련>
 - 배수설비(개인 배수관 등)설치는 하수처리 계획도에 의거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공하수관 상단부에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 후 연결시설(분기구, 단지관 등)로 시공하고, 배수 설비는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함.
4. 사업장 주변에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선행하고, 토사유출 및 공사차량의 세척·폐수 분진 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5.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민·형사상 문제 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토록 하며 피해에 대해서는 즉시 보상하고 원상복구 할 것.
6. 사유지(지장물포함)는 필히 매수 후 사업시행토록 하고, 사업 준공 후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여러개의 필지로 형성된 토지를 1개 필지로 합병하고 지목을 변경할 것.

7. 사업시행은 협의요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할 것.
8. 하수도 관련 세부사항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도 시설기준, 하수도공사시공관리지침과 인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보고서('99. 12)를 참고하여 적합하게 시공 할 것.(최소 및 최대유속 유지 등)
9. 하수도관 시공 시 수밀성이 보장되는 관종 및 접합방법을 선정하여 시공하고 시공검사(경사, 수밀, 내부)를 실시 할 것.
10.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령 제 규정에 의거 수도권매립지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공사 중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11. 사업지구내에 기 설치된 지하매설물(하수, 통신, 전기 등)이 사업시행으로 돌출시 관련부서(기관)와 협의 후 시행하시고, 공사 중 현장 안전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12.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8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는바 공사완료내용을 우리과로 통보하고, 준공 예정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기간 연장 등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3.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함.
14. 위 사항의 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미 이행시에는 임의로 본 인가를 취소 할 수 있으므로 인가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 시

간석이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고시 제 2009 - 001호

간석이화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7-52(2007.08.30)호에 의하여 준공
인가된 간석이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고시합니다.

2009. 11. 20.

간석이화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전재만

1. 사업의 명칭 : 간석이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7번지
 - 나. 면 적 : 22,627.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사업시행자
성 명	이화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전재만 신동아건설(주) 대 표 이인찬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16-7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69-167번지

4. 공사완료고시일 : 2007. 08. 30
5. 관리처분(계획)일 : 2003. 12. 27

6. 이전고시의 내역

가. 토 지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대 지	아 파 트	남동구 간석동 616-7	21,102.4	
	근린생활시설	남동구 간석동 616-7	751.2	
	계		21,853.6	
도시계획시설	도 로	남동구 간석동 616-114	299.0	
	도 로	남동구 간석동 616-115	80.0	
	도 로	남동구 간석동 616-116	394.7	
	계		773.7	

나. 건축시설

구 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비 고
연면적(㎡)	101,016.7439	1,349.25	
동 수	5개동	1개동	
층 수	지하2층, 지상21층	지하1층, 지상3층	
세 대 수(호수)	715	27	

다. 대지 또는 건축시설별 분양대상내역 및 이전내역(조합사무실에 별도 비치) - 별첨(계재생략). 끝.